

시설물 관리 규정

제정 2001. 9. 1. 개정 2013. 3. 1.
개정 2013. 7. 1. 개정 2013. 11. 15.
 개정 2016. 6. 2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무) 우리대학에 근무하는 전 교·직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시설물 관리

제3조(업무관장) ①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.
② 시설의 제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총무처장이 진다.

제 3 장 시설물의 설치

제4조(부대시설의 설치) 기존 건물에 대한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실무담당자가 그에 대한 타당성을 진단, 검토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한다.

제 4 장 시설물의 수리·수선 업무

제5조(수리·수선업무) 각종 시설물의 수리·수선 업무는 수시로 순회점검 하여 그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한다.

제6조(실무담당자의 감독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무처 실무담당자의 감독 하에 설치한다.

1. 전기시설
2. 전화시설
3. 소방시설
4. 냉·난방시설

5. 위험물시설
6. 위생시설
7. 급수·배수시설
8. 각종 탱크시설
9. 복지시설 <신설 2016.6.23.>

제 5 장 시설물의 대여

제7조(시설대여) 학교시설을 대여할 때에는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대여 할 수 있다.

제8조(신청 및 승인)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 한 후 사용한다.

제9조(시설대여료) ① 타 기관에서 시설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다. (시설대여료 산정표에 의거 매년 조정하여 부과) <개정 2013.11.15.>

② 타 기관에서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1.15.>

③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대학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관리비를 면제 또는 공동부담 하거나 여러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하위 시설물 관리비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13.11.15.>

제9조의2(승인 원칙) ① 공공성이 있는 행사나 산학협력, 대학홍보, 학문발전 등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및 워크샵, 세미나, 학회, 연수, 훈련, 수학 목적에 관한 용도일 경우 대학 시설물을 개방 또는 사용을 허가한다.

② 대학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불허한다.

③ 관리 및 보수, 유지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6.7.1.]

제10조(준수사항)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15.>

1.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·분실 유의
2. 교내·외 청결유지
3. 교내·외 수목 및 잔디보호
4. 시간엄수

제11조(보상) 시설물을 사용 중에 파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자는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6 장 기타 시설물

제12조(준용) 기타 교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 규정에 준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규정)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경대학시설물사용규정은 폐지한다.
- ③ (폐지규정)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경대학대공연장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